

의원, 특별의원 대표자 선정통보

회사명 및 기관단체명			
소재지			
선정 대표자	직위		
	성명	(한글)	(한자)
	생년월일		
	대표자 자택주소	*명절 선물 등 수령 가능 주소	
	자택전화번호		
	(실제)생일	*음력/양력 표기	
전화	사무실(비서):	팩스:	
휴대폰	대표자:	비서: (성명/직위: /)	
이메일	대표자:	비서:	

상공회의소법 제26조, 울산상공회의소 정관 제41조에 의하여 의원 대표자를 위와 같이 선정 보고합니다.

2024년 월 일

주 소 :
업 체 명 :
대표(이사): (인)

별첨 : 1. 이력서 1부 2. 반명함판(4×5) 사진 3매

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사 진 (4cm x 5cm)		울산상공회의소 의원 이력서				
		성명	한글		생년월일 (실제생일)	
			한자		주민등록번호(앞)	
			영문			
		전화번호			E-mail	
주 소						
학 력	기 간		학 교 명		전 공	
			고등학교(졸·중퇴)			
			대 학 교(졸·중퇴)			
			대 학 원(졸·중퇴)			
경 력 사 항	기 간		근 무 처	직 위	업 무 내 용	
대 내 외 포 상	일 자	내 용			시 상 처	
위에 기재한 이력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.						
2024년 월 일						
성 명 : (인)						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9조에 의하여 제21대 울산상공회의소 의원, 특별의원으로서 다음 항목에 대해 제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함에 동의합니다.

- 다 음 -

○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목적

구분	항 목	목 적
1	성명, 생년월일	· 본인식별 절차에 이용
2	전화번호(휴대폰 번호 포함)	· 상공회의소 공지사항 등 서비스 정보제공
3	주소	· 우편물 발송 등
4	본인의 우대사항 ※ 경력, 이력서, 기타 사항 등	· 우대사항에 대한 확인 · 포상 및 위원 위촉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

○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

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	2024. 2. ~ 2027. 3. *제21대 울산상공회의소 의원 기간
----------------	--

☐ 동의함

☐동의하지 않음

2024년 월 일

업 체 명 :

성 명 :

(서명)

울산상공회의소 회장 귀하

<참고사항>

[상공회의소법]

제26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

- ① 법인으로서는 위원이나 특별위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“법인의원”이라 한다)는 그 법인의 임원(영업소, 공장 또는 사업장에 법인의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으로 한다)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업무를 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.
 1.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격제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같은 상공회의소의 위원
 3. 같은 상공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
-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공회의소에 알려야 한다.

※ 제23조(의원 등의 자격제한)
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.
 1.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
 2. 피성년후견인
 3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(復權)되지 아니한 자
 4.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 5. 금고 이상의 실형(實刑)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 7.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, 특별위원 및 임원의 직(職)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의원과 특별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위원은 면직된다.

[울산상공회의소 정관]

제41조(법인의원의 대표자)

- ① 법인 또는 단체로서 의원과 특별위원으로 선출된 자(이하 “법인의원”이라 한다)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(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을 총괄하는 자로 한다)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여야 한다.
-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다.
 1. 제39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2. 본 회의소의 의원
 3. 본 회의소의 다른 법인의원의 대표자인 자
- ③ 법인의원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본 회의소에 알려야 한다.

※ 제39조(의원등의 자격 제한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.

1. 회원이 아니거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
2. 피성년후견인
3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4. 「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회생 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
5.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6.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7.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·특별위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